제819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해양수산부)	1.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기한 지정(강화)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검사시기가 만료되는 날의 3일 전까지(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중간검사 개방준비 및 검사준비사항 면제(신설)- 경질유사용 선박의 중간검사 시 연료유탱크, 여과기 등 연료공급 장치의 개방 준비사항을 면제- 총톤수 5톤 미만의 평수구역 운항 선박은 입거 또는 상가를 통한 선체외판검사를 면제	1.비중요 2.비중요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1.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관련 비밀유지계약 서류 보존(7년)(신설) □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될 예정('22. 2. 18.)이므로 개정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 * (제12조의3 제3항 신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 ○ 보존 서류 대상에 비밀유지계약서 추가(안 제6조제1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항제5의4호 신설) ㅇ 비밀유지계약서 보존 기간을 7년으로 규정(안 제6조 제2항 개정) - 법 제12조의3 위반행위는 법 제23조에 따라 조사 시효가 7년임 - 법 제12조의3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관련 서류 보존 기간 역시 7년으로 규정되어야 함 * 현재 법 12조의3 제2항 상의 기술자료제공 요구서도 보존기간이 7년임	
3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국토교통부)	1.레미콘 시공 품질관리 강화(신설) ① 레미콘 품질검사 시 기록관리 강화(지침 제38조) ㅇ 시공사가 실시하여야 할 품질시험을 제조공장에 전가하는 등 부실 품질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과정의 기록관리(사진 등) 강화 ② 레미콘 생산정보 확인 강화(지침 제38조) ㅇ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레미콘 제조공장의 배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토록 하여 제조공장의 배합비 조작을 사전에 방지 *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 중 레미콘 총 설계량이 3,000㎥ 이상(정기점검 실시대상)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다만, 생산설비 개선 등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정보 전달 방법은 레미콘공장과 시공사(수요자)가 협의 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 정보 전달방법·형식은 Data 전송, 문자,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 ③ 레미콘 공장 사전(정기)점검표 개선(안 별지8호) ㅇ 레미콘 공장점검표 점검항목 중 품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고 비경제적인 규정(생산 개시전 미리 모르타르로 믹서가동)을 삭제	
4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개정안 (환경부)	1.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 연장(강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 2022년 3월 31일	1.비중요
5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6 (휴대용 레이저용품) 개정(강화)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적용범위 확대(파장 범위가 400-700 nm인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표시사항의 국제표준 준용	1.비중요
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인증기관 및 검증기관 지정기준(신설) 자율협력주행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을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 2.검증기관의 이상행위 정보에 대한 조치 의무(신설) 검증기관이 이상행위 정보를 탐지·판단하는 경우 취해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6.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야 할 관계기관 등에 대한 통지·보고 등 구체적 조치 의무 규정 3.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신설) 자율협력주행 인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이 부정하게 지정을 받거나 업무수행 관련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규정 4.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의 장애예방·대응계획 수립, 장애발생신고 및 조치의무(신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는 인증기관과 자율협력 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관리하는 검증기관의 장애예방·대응계획 및 취해야 할 조치 등을 규정 5.인증서 폐지 관련 통지 또는 주기적 갱신, 공고 의무(신설)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폐지하는 경우 인증서 폐지목록 등 상태정보를 가입자나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최장 1일을 주기로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통지·공고하도록 규정 6.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의무(신설) 자율협력주행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관련 발생할 수 있는 가입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최소 10억원 이상의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하고, 그 용도 및 배상자력을 유지하는 방법 규정	
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인증 및 검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신설)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의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설 및 장비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 규정	1.비중요
8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	1.지분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신설) 지분 감정평가 수수료 기준 2.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수수료(신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수수료 기준	1.비중요 2.비중요
9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 연장(강화) 유효기간은 당초 '22년 1월 31일에서 '22년 3월 31로 연장	1.비중요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1.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의 신고사항 추가(강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기준을 현실화함에 따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라 시가이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의 신고서류에 행사가격 증빙서류를 추가	
1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용노동부)	1.감염병 예방조치 미이행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또는 훈련과정 실시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 규정	1.비중요
1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고용노동부)	1.감염병 예방조치 미이행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신설)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지정취소 하도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규정	1.비중요
13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정안 (고용노동부)	1.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신설) 재해위험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을 정하고(제1항, 제2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간 추가(제3항)	1.비중요